「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)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맑은물사업소장 박 정 은

2. 제안이유

가.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(약칭: 바이오가스법) (‘23.12.31. 시행) 제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
나. 바이오가스법 제5조 및 제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[시행일(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) 2025년 1월 1일]

다. 현재 구미하수처리장 내 유기성폐기물(하수슬러지, 음식물폐기물, 분뇨, 가축분뇨)을 개별처리하고 있어 도시가스 등으로 활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필요

라.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·지하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형 자원 순환 시설 구축 및 바이오가스 개질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칠곡군 석적읍 중리 412번지 일원

○ 대　　상 : 건물 연면적 22,988㎡(지하3층, 지상3층)

- 시설용량 : 유기성 폐기물 총 575톤/일

○ 기준가격 : 약 1,909억원(공사비, 시설부대경비 등)

○ 사 업 비 : 약 1,909억원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31년(10년)

○ 주요시설 : 관리동(사무실, 전기실, 숙직실 등), 기계실, 지하설비 등

○ 추진현황

- 시범사업 공모 선정(환경부) : '22. 2. 14.
-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: '22. 3. 25.
-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(기획재정부) : '22. 8. 24.
-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(공공투자관리센터) : '23. 1. 18.
- 시의회 동의안 의결 : '23. 4. 18.
- 제3자 공고 : '23. 10. 4.
-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: '24. 1. 22.
- 기본설계VE 및 실무협상 착수 : '24. 10. 24.
-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 변경협의(기재부) : '24. 12월
- 실시설계,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병행추진 : '25. 1. ~ '26. 4.
-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(안) 검토 : '25. 8월
- 실시협약(안) 및 사업자지정(안)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원안의결) : '26. 1월
- 실시협약 체결 : '26. 3월

○ 향후추진계획

- 실시설계VE요청 : ‘26. 8월
- 실시계획 승인 : ‘27. 4월
- 공사 착공 : ‘27. 7월
- 공사 준공 : ‘31. 6월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하수도특별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1건		190,900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22,988	190,9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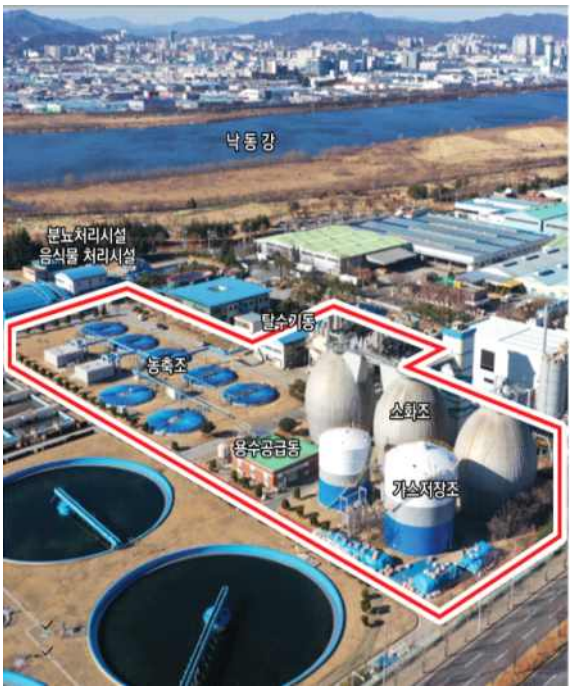
취득 재산목록

회계명 : 하수도특별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계			22,988	190,900				
취득	건물	칠곡군 석적읍 중리 412번지 일원	22,988	190,900	2031년	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화시설 설치	구미시	

위 치 도



사업 시행 전	사업 시행 후
	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」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고, 하수슬러지·음식물폐기물·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자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생산목표 달성이 법령상 의무사항이며, 현재 개별 처리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또한, 유기성폐기물의 통합·지하화를 통해 기존 처리시설을 효율화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총사업비가 약 1,909억원에 달하고 이 중 시비 부담액도 약 183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,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, 향후 사업비 증액 가능성과 시 재정 부담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시설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없 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